

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5조에 의거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저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0년 3월 30일(월) 오전 10시 00분
 2. 장 소 :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2 부산벤처타워 606호(메드파크 회의실)
 3. 회의목적사항
 - 가. 보고 안건 : 감사보고, 영업보고
 - 나. 부의 안건
 - 제1호 의안 :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件
 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件
 - 제3호 의안 :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件
 - 제4호 의안 :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件
 4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 - 가. 본인 참석시 : 신분증, 인감도장
 - 나. 대리행사 : 위임장 1부, 인감증명서 1부, 대리인의 신분증
- ※ 별첨 : 위임장 1부 끝.

2020년 3월 일

주식회사 메드파크

대 표 이 사 박정복 (직인생략)

정기주주총회 안건

제1호 의안 :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件

※ 총회 당일 배부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件

※ 별첨 참조

제3호 의안 :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件

구 분	전 기	당 기
보수 한도액	5 억원	5 억원

제4호 의안 :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件

구 분	전 기	당 기
보수 한도액	1 억원	1 억원

[별첨]

현재	변경(안)
제 1 장 총 칙	제 1 장 총칙
제 1 조(상호) 본 회사는 "주식회사 메드파크"라 한다. 영문으로는 MedPark Co.,Ltd.라 표기한다.	제1조(상호) 본 회사는 "주식회사 메드파크"라 한다. 영문으로는 MedPark Co.,Ltd.(약호 MedPark)라 표기한다.
제 4 조(광고방법)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medpark.kr)에 게재한다.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.	제4조(광고방법)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medpark.kr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.
제 2 장 주식과 주권	제 2 장 주식
제 7 조(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,000 주로 한다.	제7조(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,000주(1주의 금액 500원 기준)로 한다.
제 11 조(주식매수선택권)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「상법」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.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.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.감사 또는 피용자 및 「상법 시행령」 제 30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.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. 다만,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	제 11 조(주식매수선택권)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「상법」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. ②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.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.감사 또는 피용자 및 「상법 시행령」 제 30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.감사 또는 피용자,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5 항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회

현재	변경(안)
<p>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「상법」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·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⑤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.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<p>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<p>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한 날부터 5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 한 자는</p>	<p>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</p> <p>④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「상법」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·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⑤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.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<p>⑦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<p>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한 날부터 5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</p>

현재	변경(안)
<p>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</p>	<p>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⑨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
<p>제 18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</p> <p>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</p>	<p>제 18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</p> <p>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
제 4 장 주주총회	제 4 장 주주총회
<p>제 29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 등)</p> <p>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,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</p>	<p>제 29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 등)</p> <p>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,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
제 5 장 이사 . 이사회 . 대표이사	제 5 장 이사 . 이사회 . 대표이사
제 1 절 이사회	제 1 절 이사
제 6 장 감사	제 6 장 감사
<p>제 47 조(감사)</p> <p>①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47조(감사)</p> <p>①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.</p>

현재	변경(안)
<p>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</p> <p>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 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	<p>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, 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</p> <p>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 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</p>
제 7 장 회 계	제 7 장 회 계
<p>제 52 조(사업연도)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52조(사업연도) 좌동</p>
<p>제 53 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</p> <p>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 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대표이사는 제 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 447 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대표이사는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53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 좌동</p>

